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02
----------	------

2019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찬성자 9명)
- 나. 발의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결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인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유해물질인 마약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중 식당 등의 메뉴판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고,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중 식당 등의 메뉴판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문화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세부사항

- 동 조례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며, 시장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시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모기를 보이고 국어를 지키고 빛내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

서울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보도자료, 리플릿, 안내판, 포스터, 소책자, 서울시청 홈페이지, 웹진 등 공공언어로서의 정확성, 간결한 문장 구성, 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등의 어문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년마다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국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보도자료 등 공문서 한글 사용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서울시 국어 정책관련 기

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서울시 행정의 전반에 걸쳐 올바른 공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자체가 시민이 아닌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공문서 작성을 위한 것이었음.

- 동 조례 제20조1)에 따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살펴보면, 국어순화 교육이 아니라 글쓰기에 관심 있는 성인대상으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른 교육 현황〉

연번	연도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건수	참석인원
합 계				82건	1,637명
1	2017	3월~12월	- 한글맞춤법 기초, 문장 다듬기, 글쓰기 기초, 글쓰기 실제, 주제가 있는 글 등	30건	717명
2	2018	3월~12월	- 한글맞춤법 기초, 문장 다듬기, 글쓰기 기초, 글쓰기를 위한 주제 정하기, 글쓰기 실제, 한글가온길 답사, 주제가 있는 글 등	22건	260명
3	2019	3월~11월	- 어문규범과 글쓰기 기초(한글맞춤법과 글쓰기 일반 이론), 주제가 있는 글쓰기 전략 및 문장 바로쓰기 등	30건	660명

- 1)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더불어 ‘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시민소통담당관-16880, 2015.10.)’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글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3개 목표 9개 분야 18개 과제<표1>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이유에서 언급된 식당의 메뉴판 표기나 시민과 청소년 대상으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사업은 확인하기 어려움.

<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15년 ~ '19년) 사업 현황>

추진 목표	추진 분야(9) 및 과제(18)	추진 부서
1.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① 공공언어의 대시민 소통성 제고	
	1. 알기 쉬운 행정용어의 사용	시민소통담당관
	2.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	법무담당관
	②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조직문화 조성	
	3. 공공언어 개선 기관평가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4.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과
	③ 쉽고 바른 공문서 작성	
	5. 공공언어 교육 과정 운영	인재개발원
	6.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점검	시민소통담당관
	7. 바른 공문서 작성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담당관
	④ 민관이 함께 하는 공공언어 개선 체계 구축	
8. 국어(한글)단체, 국어문화원 시·구·중앙정부 협력	시민소통담당관	
2.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⑤ 신체 장애에 따른 소통불편 최소화	
	9.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⑥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의 국어 소통 증진	
	10.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어교육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⑦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정비	
11. 서울 좋은 간판 공모전 운영	도시및정책추진반	
3. 국어(한글)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	⑧ 시민과 함께 하는 국어사랑 한글사랑	
	12. 서울시민대학 국어 강좌 운영	서울시민대학
	13.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문화예술과
	⑨ 국어(한글)의 역사 문화 자원의 보전 및 활용	
	14. 세종이야기 운영	세종문화회관
	15. 한글가운길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정책과
	16. 광화문 한글누리 조성 및 운영	서울디자인재단
	17. 문자도시 한글서울을 위한 통합디자인 사업	서울디자인재단
	18. 한글마루지 사업	역사도심재생과

- 국립국어원의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60%가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공무원들이 공공언어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87.9%),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고(79.4%),

지나친 외래어 대신 우리말 사용, 간결한 문장 쓰기 등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명 등에서는 여전히 외래어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와 함께 ‘바른 언어문화’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성인의 88%가 우리 사회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폭력적 언어 사용과 지나친 은어 사용 등 청소년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96.6%, 중·고등학생의 82.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 인터넷 언어는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보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어휘나 잘못된 표기가 처음에는 낯설다가도 날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급기야 그것이 적절한 어휘이고 옳은 표기처럼 사용되는 등 시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교육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어휘나 잘못된 표기된 한국어에 대한 국어순화교육 실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바,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여 실시하지 않고 단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맞춤법 교육, 바른말 사용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국어순화교육 중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방법은 '학교 국어교육'으로 교과서, 교육과정 등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을 배우고 국어정서법 규정에 대해 익힘으로써 국어 순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시민을 대상(안 제1조)으로 시민을 위한(안 제3조) 시책 마련은 타당하며, 유행에 민감하여 삽시간에 광범위하게 비속어를 습득하는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 교육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안 제1조 및 안 제3조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u>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u>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u> 구성원들의----- ----- <u>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u> 에----- -----.
제3조(시의 책무) (생 략) <u><신 설></u>	제3조(시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신설되는 안 제15조의2는 시장이 광고물 영업자들에게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것임.

<안 제15조의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 광고물과 관련해 서울시는 2년마다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해당과에 전달하여 한글표기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서울시는 여러 유형의 광고물 중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광고물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광고물 영업자들에게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 및 권고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0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 (1명)

찬 성 자 : 박기재, 노승재, 경만선,
김춘례, 오한아, 황규복,
안광석, 송정빈, 이영실 의원
(9명)

1. 제안이유

- 유해물질인 마약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중 식당 등의 메뉴판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개정함.(안 제1조)
-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고,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시의 책무)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1조(목적) ----- <u>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u> ----- <u>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u>----- -----.</p> <p>제3조(시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u>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u></p>